

추 가 약 정 서

(무주택자의 전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유니온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인)
주 소 :

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무주택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합니다)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 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정해진 기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9.12.22.일 이전	2년 이내 전입	2년 이내 전입
‘19.12.23일~’20.6.30일	1년 이내 전입	2년 이내 전입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전입	6개월 이내 전입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 2조 (구입대상 고가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현재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구입하는 고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규제지역구분*	주소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해당되는 지역을 기입

제 3조 (전입 의무)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 2조의 구입대상 고가주택에 정해진 기간(다만, 고가주택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즉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다만, 고가주택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조의 구입대상 고가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 5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 주택 관련 대출^{주3)}이 제한됩니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다만, 고가주택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조의 구입대상 고가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의 구입대상 고가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